

政府投資機關의 會計에 관한 研究 —企業會計基準과의 比較 分析—

全 龍 基^{*}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政府投資機關의 公共性과 會計
- III. 政府投資機關의 經營評價
- IV. 政府投資機關의 會計情報利用者
- V. 政府投資機關會計와 企業會計의 比較(規程을 中心으로)
- VI. 問題點과 改善點
- VII. 結 言

I. 問題의 提起

오늘날 經濟活動을 수행하는 經營組織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營利組織과 事業活動의 目標가 利益獲得이 아닌 公益性인 非營利組織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營利組織의 企業活動은 利益獲得을 目標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므로 企業의 業績評價는 利益의 크기에 의하여 判斷된다. 그러나 非營利組織은 利潤動機보다는 公共性을 보다 重要視하며,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社會가 指向하고 있는 國民福祉向上이란 目的遂行을 위하여 각종 財貨와 用役을 生産·供給한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업적평가는 供給하는 財貨와 서비스의 質과 크기뿐만아니라 社會에 대한 寄與(國民福祉向上)로서 評査하게 된다.

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의 업적평가는 縮約된 單一指標로 評價할 수 없다는 特徵을 갖고 있

^{*}本 研究所 研究員 社會大 會計學科 副教授. 經營學博士, 公認會計士

다. 非營利組織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등 國家機關을 비롯하여, 敎育, 醫療, 宗教, 文化, 社會 福祉機關 등과 같이 多樣的 種類와 形態로 存在하며, 社會에 多樣的 役務을 供給하고 있으며 經濟活動에 大대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한편 經濟活動遂行에 있어 公共性을 보다 重要視하면서 營利組織의 營利事業도 同時에 遂行하는 公企業(public enterprises)의 形態도 國家政策目標 達成을 위하여 經濟活動에 參與하고 있다. 이러한 公企業은 利潤動機가 主인 私企業과 對照적인 企業形態로서, 國家 또는 地方자치단체가 公共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出資 또는 支配力을 행사하는 公的인 企業을 의미한다.¹⁾

公企業은 私企業에 대응되는 概念이지만 그 性格은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의 折衷形態라고 할 수 있으며 利潤動機보다는 公共性을 더욱 重要視한다. 즉 公企業의 中대한 利害關係者는 國民大衆이므로 出資와 支配力을 갖고 있는 國家機關이나 公企業經營者는 國民大衆의 利益과 福祉增進에 目的을 두고 公기업을 經營管理하여야 한다. 이러한 公企業의 形態는 公社, 公益事業, 公共企業體, 株式會社形態의 公企業, 政府投資機關, 政府企業 등으로 分類되고 있다.²⁾

특히 政府가 納入資本金의 50% 以上을 出資한 企業體를 公기업으로 볼 때에 각종 公社(public corporation), 公益企業, 公共企業體를 모두 망라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 國內總固定資本形成의 13.5%와 總外債殘額의 25.8%라는 莫大한 比重을 占하고 있는 公企業의 代表格인 政府投資機關³⁾의 會計에 대하여 會計情報算出制度인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을 中심으로 企業會計基準과 比較하여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를 比較分析기로 한다. 政府投資機關이 國民經濟와 公共性에 미치는 影響이 莫大하고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指導해야 할 目標을 達成하는 役務을 수행하기 때문에 政府投資機關의 效率性評價와 이에 必要한 會計情報의 有用性은 더욱 增大되고 있다.

II. 政府投資機關의 公共性和 會計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고 있는 公企業 中에 政府 등이 發行資本金의 50% 以上을 出資하고 繼續的으로 支配力을 갖고 있는 企業體를 政府投資機關이라고 하였다. 이들 投資機

1) 西川義朗, 公企業會計, 日本國民書房, 昭和53.3, p. 1.

2) 俞焄, 公企業論, 法文社 1985, 3.p. 19.

3) 朴忠煥, 非營利機關의 會計, 法文社, 1985. 5. pp. 146-148.

4) 宋大熙의, 公企業經營評價의 理論的背景과 技法, 經濟開發研究院, 1987. 5.p. 36.

關은 國家의 基幹産業으로서 이들 기관의 效率인 投資管理는 매우 중요한 政策적 意味를 갖는다. 이들 投資機關의 活動目標은 公益性的의 增進 즉 國民福祉水準의 向上이라고 할 수 있는데 投資機關이 추구하는 內容은 매우 포괄적이고 그 構成要素들 間에 이율배반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政府投資機關은 自然的 獨占을 恒有하므로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어느 組織보다 클 뿐 아니라 國民福祉에도 상당한 影響을 주므로 政府投資機關의 公共性和 함께 企業性이 調和있게 유지되도록 經營・管理되어야 한다.

公共性은 概念的 抽象이 아니고 實體的 當爲인 것이다. 個體의 발전과 행복이 모여서 國家의 발전과 복지가 다듬어지기 때문에 公共性和 企業性은 對立關係에 있기보다는 補完關係에 있다고 하겠다.⁵⁾

公企業이 건전하고 效果的으로 운영될 때 公企業의 公共性도 보다 만족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非效率적이고 퇴행적인 公기업이 어떻게 公共性의 증진에 기여하겠는가? 非效率적인 즉 企業성이 없는 公기업은 國民부담만 加重시키고 公益增進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經濟性있는 企業性和 調和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會計는 本質적으로 人間이 必要에 의해 창안한 制度이기 때문에 會計結果(outputs of accounting)를 必要로 하는 사람이 存在한다. 會計情報의 利用者란 會計結果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정보를 必要로 한다. 會計情報利用者들은 會計의 測定對象이 되는 經濟現象(economic phenomena)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위하여 회계정보를 必要로 한다.⁶⁾ 會計情報利用者を 특별히 구별해 내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어떤 개인이 會計情報利用者인지 아닌지를 判別할 수 있는 구체적인 基準은 없으며 또한 時間적인 관념에서도 현재 내지 未來의 潛在적인 利用者들도 存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會計情報利用者は 會計情報가 나타내는 實際의 經濟的 現象에 대하여 直・間接적인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個人, 集團 或은 組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들 會計情報의 利用者들은 基本的으로 合理的 判斷과 經濟的 意思決定(informed judgment and decision making)을 위하여 會計情報를 利用한다. 會計情報의 구체적인 利用目的은 다음과 같다.⁷⁾

5) 宋大熙외, 전계서, pp. 48-49.

6) 趙星河, 中級會計, 貿易經營社, 1988. 3, p. 34.

7) A. A. 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ASOBAT), Euanston, Illinois, 1966, p. 4.

- ① 社會의 限定된 資源(limited resources)의 利用에 관한 意思決定
- ② 組織의 人的·物的資源의 効率的인 指揮와 統制(directing and control)
- ③ 受託資源의 管理(maintaining)와 受託責任의 報告(reporting)
- ④ 社會의 機能과 統制(social functions and control)의 촉진

社會의 限定된 資源의 効率的인 配分은 個人的인 經濟的 의사결정으로 自身の 富(wealth) 또는 效用(utility)을 極大化시킴으로써 社會의 富(social wealth)를 증대시키며 특히 組織內 各種資源을 効率的으로 管理하고, 經營計劃의 樹立과 집행을 지원하며, 資源의 受託者로서 受託責任을 委託者인 出資者와 債權者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 때 委託者와 社會가 必要로 하는 各種情報를 提供하므로 經濟政策, 産業政策, 稅務行政의 合理化를 기하게 된다.

會計情報의 特性은 화폐액으로 表現될 수 있는 數量的 情報(quantitative information)로서 화폐단위로 표현되는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에 관한 정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會計情報는 일부 豫測値가 包含됐지만 主로 歷史的인 過去經濟情報로서 利用者들이 要求하는 情報의 一部로서 회계실체에 관한 모든 現象을 전부 나타내지 못한다는 特殊性도 있음에 유의 해야 한다.

Ⅲ. 政府投資機關의 經營評價

우리나라 政府投資機關 25個社를 그 設立目的과 經營事業內容에 따른 公共性을 基準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3個分野로 區分하고 있다.⁸⁾

- ① 國民生活에 必要한 財貨와 用役의 增進供給에 높은 經營비중을 두는 기관(한국산업은행의 18개)
- ② 國民生活에 必要한 재화와 용역의 分配改善에 높은 比重을 두는 기관(근로복지공사 1개)
- ③ 國民生活에 必要한 재화와 용역의 增産과 分配改善을 同時에 추구하는 기관(한국주택은행의 6개)

이러한 公企業인 政府投資機關의 經營評價에 있어서 公共性은 두가지 側面에서 다루어 진다.

첫째, 公企業(政府投資機關)의 經營評價를 私企業(一般營利企業)의 經營評價와 같이 收益性

8) 宋大熙외, 전게서, p. 42.

이나 效率性을 中心으로 실시해 나가는 企業性評價

둘째, 政府政策遂行에 따른 純粹經營努力과 社會福祉에의 寄與度 評價 즉 公益性評價

이와같이 政府投資機關의 經營評價에는 計量的 情報과 非計量的 情報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私企業의 經營評價모델과는 다른 別途評價모델이 要求된다. 따라서 政府投資機關 등 公企業의 經營評價指標 設定에는 다음과 같은 4個原則과 6個 重要 고려사항을 감안하고 있다.⁹⁾

- ① 純粹經營能力評價
- ② 長·短期經營評價
- ③ 結果中心 經營評價
- ④ 公共性 優先評價

이상의 4個原則에 ①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② 改善可能性(improvability) ③ 管理可能性(controllability) ④ 相對的重要性(relative materiality) ⑤ 充分性(sufficiency) ⑥ 比較可能性(comparability) 등 6個事項을 考慮하여 評價모델을 만들어 積極的으로 評價하고 있다.

IV. 政府投資機關의 會計情報利用者

會計는 어떤 組織의 「利害關係者들이 事情을 잘 알아서 判斷이나 意思決定을 할 수 있도록 經濟的인 情報을 識別하고 測定하여 傳達하는 過程¹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체적 인 여러 活動(alternatives)中에서 合理的인 選擇을 하는 經濟的意思決定(economic decision-making)에 有用한(useful) 計量的 情報을 提供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會計情報의 有用性(usefulness)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가 目的適合性, 檢證可能性, 不偏性, 計量可能性, 理解可能性, 充分性, 實用性 등의 特性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회계이론이 이러한 정보의 屬性을 會計基準으로 받아들여 財務會計處理基準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基準들을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企業會計基準」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은 先進社會(주로 美國, 日本)에서 발달하여 형성된 會計制度를 도입하여 우리 經濟與件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정을 가한 뒤 經濟社會를 指導하는 하나의 社會的 制度로서

9) 宋大熙외, 전계서, pp. 52-60.

10) A. A. 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Evanston, Illinois, 1966, p. 1.

確立된 것이다.¹¹⁾ 따라서 우리나라 會計業務속에서 發達된 諸原則가운데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바를 要約한 것이라고 할 수 만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先進社會에서 發達한 것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會計原則이나 基準은 會計實務를 指導하는 原理이기 때문에 經濟社會의 現狀이 變遷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면서 또다른 회계실무를 발전 시키게 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營利組織인 企業에 대하여는 「企業會計基準」이 적용되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豫算會計關係法에 따른 政府會計, 政府投資機關에 대하여는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이 적용되고 있다. 이 以外에 각종사립학교는 「私學機關財務會計規則」, 私學機關 中の 大學에 대하여는 「私學機關과 學校法人에 대한 財務會計 特例規則」, 각종 사회복지법인에는 「社會福祉法人의 財務會計規則」, 병원이상의 의료기관은 「病院會計準則」, 각종 保險會社들은 「保險會社 標準會計規程 및 財務諸表規則」등을 制定하여 적용하고 있다.¹²⁾ 우리나라의 基本的 會計基準을 制定하고 있는 證券管理委員會에서는 企業會計基準에 基하여 業種別會計基準으로서 「建設業會計基準」, 「리스회계처리기준」 등을 제정하여 각 經營조직의 特殊性과 각 組織利害關係者의 情報欲求를 충족시켜주려고 힘쓰고 있다. 이러한 經濟社會의 多様な 組織形態와 業務性格 내지 이해관계자들이 상이함에 따라 多様な 會計基準들이 法의 形態로든지 指針의 形態로든지 제각기 相異한 目的適合性을 갖고 적용되고 있다.

특히 政府投資機關의 경우에는 政府機關이 資本參加와 支配力을 갖고 있다는 共通點은 있지만 投資機關들의 業務性格과 指向目標가 제각기 相異하다는 特性이 있다. 즉 韓國産業銀行 등 金融機關을 비롯하여 勤勞福祉公社에 이르기까지 각종 公企業이(18個) 각각의 特別法에 따라 設立되어 있다. 이들 政府投資機關의 會計情報利用者들은 주로 出資者이며 支配管理機關인 政府機關을 비롯하여 立法府와 內部 經營陣들이다.

이러한 政府投資機關의 特殊性和 公益性을 바탕으로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따라 共通的으로 적용할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을 제정하고 각 投資機關의 多樣性을 인정하여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旅行規則」을 각 投資機關마다 實情에 適合한 會計節次를 제정하도록 委任하고 있다. 政府投資機關의 經營評價에 있어서는 會計情報가 評價要素 中에서 重要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나 非會計的인 情報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는

11) 李正浩, 現代會計理論, 경문사, 1985. 8, p. 171.

12) 朴忠換, 전계서 p. 226, 359, 481.

이질적인 요소들을 종합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豫算에 의한 實績評價, 事業計劃의 達成程度 測定 등으로 期間業績評價의 方法에 의하여 經營이 管理統制되고 있다고 하겠다.

V. 政府投資機關會計와 企業會計의 比較

公企業인 政府投資機關과 營利企業은 모두 經濟活動을 수행하고 있다는 點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營利組織인 私企業은 이윤동기에 의하여 事業活動을 하지만, 公企業인 政府投資機關은 이윤동기보다는 公共性에 比重을 두고 특별법에 의하여 獨占的인 事業活動을 정부정책방향에 의거하여 企業性和 調和를 이뤄가며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인 政府投資機關은 政府의 통제를 받아가며 政府機關이 임명하는 經營者에 의하여 경영되고 그 受託責任을 政府機關에 報告하고 經營評價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國民의 대표기관인 國會의 감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企業性和 公共性的 調和있는 경영이 요구되므로 올바른 경영평가를 지원하고 설립 취지에 맞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會計制度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이다. 이러한 정부투자기관을 營利企業에 적용되는 企業會計基準과 比較하기로 한다. 營利企業에는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企業會計基準」이 있으며 정부투자기업에는 기업성 측정을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바탕으로 한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이 있다. 이양기준을 比較하고 差異點과 이에 대하여 論理的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도 그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0. 3. 29. 자로 대폭 改正되었다.¹³⁾ 한편 같은 맥락에서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도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따라 1984. 3. 1에 제정된 이래 10여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⁴⁾

1) 會計의 目的

會計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이 必要로 하는 경제활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13) 1958년에 企業會計原則으로 성문화된 이후 일부개정, 1974. 7. 18별도로 상장법인등의 會計處理規定制定, 1976. 7. 22. 企業會計原則의 개정, 1981. 12. 23, 企業會計基準으로 새로 제정한 후에 3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최종개정 1990. 3. 29).

14)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은 재무회계기준 뿐만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會計關係業務인 會計帳票, 금전수지관리, 예산, 계약, 해외사무소회계, 原賈計算과 經營分析 등 會計 關聯諸般業務를 다루고 있어 수시로 개정되어 왔다. 현행규정은 1984. 3. 1.에 제정되어 10여차례 개정되었으며 최종개정은 1990. 1. 18에 계약관련조문을 부분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면 재무회계편이 또다시 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目的을 위하여 정보를 測定 提供한다.

- ① 限定된 資源을 有效하게 活用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提供한다.
- ② 經營內의 人的·物的資源을 有效하게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提供한다.
- ③ 資源의 保全과 그 管理에 관한 보고를 한다.
- ④ 社會的인 직능 및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企業會計의 第 1次인 目的은 企業外部에 있는 各種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必要한 情報(주로 財務諸表)를 마련하여 제공하는데 있다.¹⁵⁾ 會計는 조직의 各 이해관계자 집단 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특정목적 회계보고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一般目的을 위하여 작성된 一般目的 회계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작성 不特 定多數의 利用者에게 提供한다. 企業會計基準이나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은 一般目的을 위한 會計報告書인 「財務諸表」를 작성 보고하는 회계 업무에 관련된 규정이다. 기업회계기준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의 目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기준과 회계규정의 목적비교

企 業 會 計 基 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제 1조(목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統一性和 客觀性을 부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목적)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업무에…… 주요기준과 절차를……
제 2조(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합리적인 意思決定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없음)

15) AAA. ASOBAT. pp. 4-5.

16) 李正浩, 전계서, pp. 209-210.

會計의 目的이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測定・전달하는데 있으며 有用性이 있으면 “目的適合”하고 “信賴性”있는 정보를 산출하여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모두가 기업의 회계에 統一性和 客觀性을 확보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으며 회계처리의 자의성을 가급적 배제하고 歷史的인 事實을 記錄하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하겠다. 또한 兩會計는 모두 法的根據를 갖고 있어 監査의 合法的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會計情報의 有用性이나 情報價値 특히 未來豫測能力이나 情報의 經濟性(정보로부터 얻은 利益과 정보산출원가의 대비)은 도외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각종 양식의 획일화와 부속명세서의 첨부 의무는 감사인이나 감독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企業會計基準는 第2條에서 會計의 情報價値를 인식하고 適正한 報告를 들고 있어 情報利用者에 대한 會計의 目的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政府投資機關은 出資者와 支配機關이 政府이므로 정부가 관리감독상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報告內容을 중복해서 報告되도록 하고 있으며 特히 情報의 經濟性과 會計情報의 有用性보다는 감독의 便利性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兩會計基準는 모두 根據法律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제정된 會計의 行爲基準으로서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會計基準이 法律的 次元에서 추구하고 있는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節次로 인식되고 있다. 會計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결코 法에서 추구하는 目標과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⁷⁾

양 회계의 法的 根據와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區 分	企 業 會 計 基 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母 法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施 行 令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施行規則	準則 및 例規	會計規程施行細則

2) 政府投資機關會計와 豫算會計

一般的으로 公企業會計는 私企業會計와는 달리 철저한 豫算(budget)의 기초위에서 이뤄진다. 이 豫算은 당해 공기업의 업무계획을 회계적 의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 회계적 의사는

17) 李正浩, 전계서, pp. 189.

公企業活動全般에 걸쳐 규제되고 제약되어 限定된 資源의 범위내에서 경영활동을 하게 한다. 영리기업의 私企業會計는 豫算이 任意的이고 설정된 예산이 이윤추구나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가능한 彈力性이 있고 企業會計는 豫算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政府投資機關 등 公企業은 豫算이 必須的이며 모든 영업활동을 예산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企業豫算會計法은 特別會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입·지출 및 손익계정, 자본계정 등에 대한 회계적 의사를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⁸⁾

따라서 政府投資機關의 會計는 豫算會計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은 豫算에 관한 내용을 제7장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會計의 一般原則

財務會計를 이루는 理論構造는 下部構造, 中間構造와 上部構造의 3京層으로 구성되어 있다. 下部構造는 재무회계의 바탕을 이루는 基礎와 그 基本的인 目標 또는 命題를 提示하는 것으로 이를 會計公準(accounting postulates, basic assumptions)이라고 하며, 中間構造는 下部構造인 會計公準에 입각하여 財務會計의 구체적인 行爲規範 또는 行動指針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會計原則(accounting principles)또는 會計基準(accounting standards)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재무회계이론 구조의 맨 上位構造는 이러한 會計公準과 會計原則을 바탕으로 하여 재무회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기술 또는절차를 제시한 것으로 會計規則(accounting rules)또는 會計節次(accounting procedures)라고 한다. 이러한 3단계 회계이론 구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살펴보면 前述한 法體系와 같으며 이를 兩會計에 따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업회계기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1. 하부구조(회계공준)	—	—
2. 중간구조(회계원칙 또는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3. 상부구조(회계규칙 또는 회계절차)	기업회계준칙, 예규	회계규정시행세칙 (각사마다 상이함)

企業會計基準은 ① 一般的으로 요청되는 指導的 會計處理原則 ② 財務諸表作成基準의 會計基準과 ③ 財務諸表作成 형식상의 規則인 용어, 양식, 작성방법 등 細則을 모두 하나의 企業會

18) 朴忠煥, 전계서, p. 189.

計基準으로 통합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會計基準의 中間構造와 企業會計準則이나 例規의 上部構造의 관계가 모호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도 상부구조와 중간구조와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정보의 有用性を 제고하기 위하여 6個의 一般的인 會計原則을 선언적으로 明示하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은 정부기관의 지배력행사와 이해관계의 제한성 때문에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회계원칙을 특별히 明示하지 않고 있다.

기 업 회 계 기 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3조(일반원칙) ① 신뢰성원칙(객관성, 공정성) ② 명료성원칙 ③ 충분성원칙 ④ 계속성원칙(기간비교가능성) ⑤ 중요성원칙(실용성) ⑥ 안전성원칙(보수주의)	규정하지 않고 있음

투자기관회계규정은 회계정보의 예측가치보다는 검증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된다. 투자기관회계규정에서는 계정과목의 설정에 있어 중요성, 명료성, 계속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¹⁹⁾ 일반원칙이 아니라 계정과목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구체적 요구라고 볼 수 있으므로 一般會計原則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會計情報의 예측가치와 유용성보다는 역사적기록의 진실된 감사를 위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期間比較可能性을 인식하여 회계처리의 기준으로서 계속성원칙은 수용하고 있다.(회계규정 第17條의 1)

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作成基準

기업회계기준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은 공히 「財務諸表」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작성원칙을 따로 열거하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은 일부만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회계실무에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재무제표의

19) 政府投資機關 會計規程 제14조(계정과목) 제3항.

양식과 부속명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회계의 재무제표작성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업회계기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1. 대차대조표작성기준 (제11조)	① 區分基準 ② 總額基準 ③ 1年基準 ④ 流動性排列基準 ⑤ 剩餘金區分基準 ⑥ 移延資産基準	1. 一제52조, 64조, 92조, 96조 제53조 — — — —
2. 損益計算書의 作成基準 (제65조)	① 발생주의 실현주의 기준 ② 수익비용대응표시기준 ③ 총액주의 기준 ④ 구분표시기준	2. 一제102조 ①, ② 제104조 ① 제103조 제104조 ②

이상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必要한 중요사항은 해당조문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은 양회계가 동일한 기준에 따르고 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으로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1년기준 등 4개 기준은 個別條文으로 흡수할 곳이 없어 明示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대차대조표의 양식을 보면 모두 기업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작성기준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기준 제10조①항에서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資産, 負債, 및 資本을 「適正」하게 表示하여야 한다”고 하여 完全性和 適正性を 요구하면서 회계정보의 有用性和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完全성을 위하여 外形上의 形式뿐만 아니라 實質的 內容의 적정성을 要求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²⁰⁾ 정부 투자기관회계규정 제60조에는 海外資産을 적절한 방법으로 評價하여 資産으로 計上하도록

20) 崔柄星, 企業會計의 理論과 實務, 중앙경제사, 1984. 1 p. 94.

하였다. 이는 기업회계기준보다 자산의 適正表示面에서 적극적이라고 하겠다. 資産管理의 철저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貨幣性外貨資産과 外貨負債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 적절한 換率로 환산하여 환산손익을 計上하나 非貨幣性項目은 그 자체가 실질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손익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이 일치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4개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現金主義가 許容되고 있다.²¹⁾ 이는 會計主體의 사업특수성을 반영한 사업별회계규정의 일환이다.

5) 資産과 負債의 評價

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1) 資産의 評價基準	제 91조 ① 취득원가주의 자산재평가 수용(제 91조의 2) ② 원가배분의 원칙 (동태론 제91조의 2)	제54조 ①항 제55조 제54조 ②항	양회계가 同一함 기업회계가 최종개정시 수용함 양회계가 동일함.
(2) 有價證券의 評價	제92조 ① 시장성 있는 ② 단기자금운용. 1년 내 처분목적 ③ 低價基準適用義務化 ④ 總計基準	제66조 ① - ② 일시적소유 ③ 저가기준 注意 단, 30 % 이상 하락시 의무화 ④ 종목별 또는 총계기준평가	기업회계기준은 자산가치의 현행가치반영을 위하여 저가평가를 의무화함. 기업회계기준은 최종개정에서 portfolio 개념을 도입하여 총계기준평가만 채택

21)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02조 3항 및 제106조 6항.

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3) 投資資産의 評價	⑤ 間接法(充當金設定)	⑤ 同左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는 출자금에 관한 규정없음.
	⑥ 시가의 회복시 환입 가능	⑥ 同左	
	⑦ 총평균법, 이동평균 법적용	⑦ 同左	
	① 대상: 가. 투자유가증권 나. 관계회사유가증권 다. 출자금	① 대상: 가. 同左 나. 동좌 다. -	
	② 취득원가 : 매입가액+부대비 용	② 동좌 (단, 선이자공제한 경우 는 공제전 가액)	
	③ 총평균법, 이동평균 법	동좌	
	④ 低價基準適用義務化	④ 저가기준적용임 단, 30% 이상하락시는 의무화	
	⑤ 時價 또는 순자산가 액	⑤ 동좌	정부투자기관회계는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있음.
	⑥ -	⑥ 비상장주식은 장부가액의 50%이상 현저히 하락시 에 이 低價 主義強制適 用, 단, 실제가치가 장부	회계규정: 상장기준 기업회계기준이 상장기준에 서 시장성기준으로 개정함 에 따라 차이가 생겼음.

政府投資機關의 會計에 관한 研究

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가액을 上廻한다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低價基準적용을 排除可能(임의)	
	⑦ 실질적으로 경영권 지배하는 관계회사주식은 저가기준적용을 배제가능하며 이때 註釋이 요구됨	⑦ -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이 되기 때문임.
	⑧ -	⑧ 산업조정, 산업정책상 국민경제기여도가 큰 기업을 취 득시에는 低價基準適用을 排除可能(임의)	
	⑨ 평가방법:(규정없음)	⑨종목별 低價基準	
	⑩ 간접법, 시가의 회복시에 還入	⑩ 同左	평가충당금범위내에서 환입
(4) 長期保有債券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경우에 差額을 有效利子率法등을 적용하여 상환기간에 걸쳐 加減調整	每期一定한 方法으로 조정	기업회계는 정액법외에 유효이자율법을 도입함
(5) 在庫資産	제93조 ① 評價方法:個別法外 5. 단, 매출가격환원법의 남용방지	제68조 ① 개별법의 5-예정단가법	회계기준의 총평균법을 회계규정에서는 평균원가법으로 함.

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6) 固定資產	③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시에는 低價主義 적용가능 단, 품질저하, 진부화, 손상등은 저가평가의무. (강제저가기준)	③ 시가가 30 %以上 형저히 하락. 회복전 망없으면 低價基準 강제적용.	
	④결산일현재 물가조사표에 의한시가(결산전 1월평균도매물가)	④ 동 좌	
	⑤ 저가기준의 평가손실 直接法 適用	⑤ 동 좌	
	—	⑥ 무상취득 또는 再活用資產은 “정당한”評價額으로 評價	기업회계는 보수주의로 계상 안함
	⑦—	⑦ 재고자산 지연감모는 시행세칙에 위임	
	제96조	제76조	
	① 취득원가: 가. 제작 또는 매입 :제작가액(매입가액)+취득부대비용 나. 현물출자: 교부주식의 발행가액 다. 교환·증여 기타 무상취득: “공정한”평가액	① 취득원가: 가. 구입가격+부대비+설치비(또는 제작원가+설치비) 나. — 다.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취득 자산: “정당한”평가액	

政府投資機關의 會計에 관한 研究

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라. 교환취득: 양도자산의 장부가액+교환차금+ 부대비	
	② 감가상각필 고정자산: 잔존가액 또는 비망가액	② -	
	③ 건설자금이자:(취득 원가에 가산) 제작매입건설에“직 접사용한 차입금” 에 대한 취득완료시 까지 발생금융비용 에서 차입금 중 예금수입이자 차감	건설기간중“건설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기업회계 기준도 차입금의 순지금이자로 개정하므로 단기차입금이자도 포함토록 개정.
(7) 무형고정자산	① 취득소요가액	① 동 좌	
	② 정액법 또는 생산량 비례법	② 정액법 광업권은 생산량비례법 적용가능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광업권이의 무형고정자산도 생산량비례법 적용가능.
	③ 직접법	③ 동 좌	
	④ 영업권은 5년이내 매기 균등액상각	④ -	기업회계기준에는 상각방 법 명시
(8) 移延資産	① 창입비: 5년이내의 기간에 균등 상각	① 5년에걸쳐 균등상각	1) 기업회계기준은 특정기 간이내 상각이나, 투자기 관회계규정은 특정기간 에 상각

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② 개업비: 3년 ③ 신주발행비: 3년 ④ 사채발행비: 3년 ⑤ 시험연구비: 5년 ⑥ 환율조정차:	② 3년 ③ 3년 ④ 3년 ⑤ 5년 ⑥ 5년에 걸쳐 균등상각 ⑦ 기타 이연자산: 監時巨額の 손실로 재무 부장관 승인으로 계상하 고 상각방법도 승인	2) 기업회계기준에서 환율 조정차를 당기비용처리토록 개정 3)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은 정책적배려로 임시 거액손 실을 이연처리
(9) 負債의 評價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 액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는 관계규정없음.
(10) 社債發行差金 轉換 權調整新株引受 調整	① 사채발행년도부터 최종 상환시 까지 상각또는 환입 ② 有效利率法 등 ③ 社債利率로 처리 (동상각 및 환입액) ④ 사채에서 차감형식 으로 기재	① 사채 할인발행 차금만 규정 사채기간에 상각 ② 정액법 ③ 동 좌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사채의 발행에 따른 할인발행차금을 전환권 조정·신주인수권조정계 정으로 하여 모두 유효이 자율법 등을 적용감액토 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 ② 기업회계기준개정으로 사채이자에 가감됨 ③ 투자기관회계규정은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11) 移延負債	삭제(제101조)	제94조 환율조정대 장기선수 수익등 기타이연 부채	동일함 기업회계기준개정으로 환율 조정대는 당기수익으로 계상되어 본계 이 삭제 됨
(12) 外貨資産과 外貨負債의 換算	① 화폐성의 화자산 및 부채: B/S일 현재 적절한 환율로 환산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취득 또는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 로 환산 ③ 외화환산손익은 상계하여 순평가손 익으로 하며 당기손 익계산서에 計上 (移延處理不認定) ④ 유가증권은 화폐성 과 비화폐성의 양면 성이 있으므로 보유 목적과 성질에 따라 구분	① 특정규정은 없으나 이를 수용하고 있음 ② (외환차손익, 외화평가손 익, 환율조정대환입) ③ 장기성의화자산부채의 임시거액 외화평가손익 은 환율조정借 또는 貸로 이연처리가능 ④-	①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 로 평가를 환산으로 명칭 변경 ②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환율조정차상각은 명시 안되었음 ③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은 개정전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였음.
(13) 海外支店 등의 外貨換算	① 해외지점, 사업소, 중속법인의 외화환 산은 외화자산부채	관련규정이 없음	

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14) 資產・負債의 現在 價值評價	의 환산에 따름 ② 일괄 환산시에는 자산부채는 B/S일 현재 환율, I/S는 회계년도 평균환율 적용 ③ 환산차액은 “해외사 업환산차 또는 대” 로 하여 資本調整항 목으로 이연처리하 고 차기이후 발생차 액과 相計表示 ④ 관련지점 등의 폐쇄시 에는 당년도의 특별손 익으로 처리	해당사항없음	기업회계기준은 개정전에는 상각하였으나 이연처리해 서 자본조정항목으로 변 경
	① 長期延拂條件, 賣買 또는 類似한 去來에 따른 자산, 부채의 名目價額과 現在價 值의 重要な 差異인 경우, 現在價值評價 ② 去來發生時 또는 계약조건변경시 ③ 현재가치 = 당해자산 의 公正價額, 또는 미래채권・채무총금 액의 현재가치 할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신규로 導入됨(移延支給契 約에 의한 固定資産取得).

政府投資機關의 會計에 관한 研究

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액 ④ 할인이자율= 관련 시장의 동종유사채권 채무의 이자율을 기초한 적정히 산정 한 이자율 ⑤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주식 ⑥ 유효이자율법 적용 상각및 환입. 지급 이자, 수입이자로 계상		
(15)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배당건설이자	(제62조, 제104조, 제 106조) ① 자본조정 항목으로 하며 자본에서 差減 形式으로 기재 ② 주식발행년도부터 3년내 매기정액상 각. 단, 결손시는 차기이후로 이연상각 ③ 배당건설이자는 개업 후 년6%이상의 이익배당시에 6%를 초과액 이상을 상각 ④ 상각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으로함	(제99조, 제101조) 동 좌	

(16) 先物換去來	① 환율, 이자율변동회 피목적의 선물환, 스왑, 선물계약 등 ② 관련자산부채를 계약 에 정한 환율 또는 이자율을 적용처리함 (原則)	관련규정없음	기업회계기준에 새로 導入
------------	---	--------	---------------

6) 充當金の 設定

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I) 負債性充當 金	(제47조) ① 種 類 ① 가. 퇴직급여 총당금 나. 수선충당금 다. 판매보증충당금 라. 공사보증충당금 ② 性 格 가. 당기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 지출 확실한것 나. 당기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合理的인 것. ③ 가. 회계년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 급여충당금 경과조치: 미달금액은 1990. 3. 29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년도부	(제95조) ① 種 類 ① 가. 퇴직급여충당금 나. 특별수선충당금 다. 판매보증충당금 라. - ② 性 格 -(없음) - 가. 결산일 현재 소요될 총액 (강제): 퇴직급여충당금 경외조치: 5년 이내 균등 액이상 추가계상(강제)	기업회계기 준개정에서 정부투자기 관회계규정 에 접근하

D2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터 10년 이내 매기 균등액 이상 또는 매기 계상할 퇴직충당금 의 10 % 이상 상당액을 추가 계상(강제) 나. 기타충당금: 推算額을 計上 ④ 年次的으로 分割使用하거나 全部 또는 一部の 使用時期를 豫測不能 한 경우: 固定負債 ⑤—	나. 기타충당금: 일정비율(계속 성유지) ④ — ⑤ 法人稅法 損金設定 限度內 設定	있음
(2) 貸損充當金	(제75조) ① 설정구분: 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貸損推算額—대손상각 나. 回收가 不可能한 채권—대손상 각 ② 설정액의 손익구분: 가. 상거래에 따른 매출채권: 판매 비와 일반관리비 나. 기타채권: 영업외비용	(제65조, 제110조) ① 설정구분: 가. 대손추산액—貸損充當金轉 入額 나. 貸損償却 ② 설정액의 손익구분 가. 동 좌 나. 동 좌	기업회계기준은 대손충당금전입 액과 대손상각을 통합하도록 개정 함.

區 分	企業會計基準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	備 考
	③ 추산방법(선택): 가. 개별적으로 대손추산 나. 과거의 대손 경험율에 의거 일정산정기준(계속성유지) ④ 대손발생의 처리 가. 충당금상계후 잔액은 당기비용 나. 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잔액 =설정할 대손충당금	③ 추산방법: 가. (채권액-국가기 관, 타투자기관의 채권)×과거 5 년간 평균대손경험율=대 손추산액 나. 경험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세법한도 범위에서 별도로 추산액을 산출 ① 대손발생의 처리 가. 同左 나. 同左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부족이 과중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동소요액 전액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거의 퇴직금설정미달액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계상하는 것으로 附則에 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기준시행일 이후 개시도는 회계년도부터 向後 10年以内に 걸쳐 매기 균등액 또는 매기의 설정액의 10%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설정 부족액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에 따라 비용성충당금과 손실성충당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支給指示에 따라 流動性充當金(유동부채)과 固定性充當金(固定負債)로 구분된다.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그 一部를 年次的으로 사용하는 것은 固定負債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회계 규정에는 유동성과 고정성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 없다.

貸損充當金の 設定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은 합리적인 설정방법을 기업에 위임하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회계 규정에서는 統一化시켰다. 즉, 과거 5년간 평균 대손경험율을 적용하여 세법의 한도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였다.

7) 資本의 支出과 收益의 支出

區 分	企業會計基準(제76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제111조)
1. 자본적지출	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연장 ②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지출	①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으로 인한 내용년수 연장 ② 자산가치의 증가 ③ 기존고정자산의 용도변경 ④ 고정자산 신설을 위한 기존고정자산의 철거비 ⑤ 재해손실자산의 복구비
2. 수익적지출	①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용 지출 ②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① 경상적 修理목적지출 ②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 ③ 매기 평균화되는 交替자산의 취득원가 ④ 기타 세법을 준용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서는 資本의 支出과 收益의 支出의 區分을 보다 明示하고 있어 各 投資機關의 統一性을 確保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주체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면서 회계담당자의 회계정보가치를 인식하여 보고토록 허용하고 있다.

8) 註釋事項과 附屬明細書

구 分	기업회계기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1) 주식사항	① 필수주식 사항 자기사채의 취득경위 등 20個 事項 ② 보충적 주식사항 회사의 개항과 주요정책변경내 용등 17個 事項	(1) 주식사항 특별상각에 대한 주식사항

(2) 부속명세서		(2) 부속명세서
① 필수부속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등 16個		① 필수부속명세서 사업계획대 실적 등 67個
② 조건부 필수부속명세서 : 매출액명세서 등 3個		② -
③ 任意의 부속명세서 현금예금명세서 등 10個		③ -

이상의 表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회계기준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석으로 表記하여 利用者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개정전에는 재무제표를 간결명료하게 작성하도록 계정과목중 열거되지 않은 기타계정의 計上額이 중요성기준이라고 제시한 총자산액이 2%, 손익각과목의 20%를 초과하는 것은 구분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중요성 판단을 일괄규정하고 판단은 회계주체에 위임하고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기업회계기준 제6조의 2). 또한 부속명세서의 경우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투자기관회계의 경우는 주무부서에서 지배권행사와 관련하여 세밀한 내용을 보고토록 방대한 부속명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부속명세서 없이도 기타 재무제표에서 손쉽게 알 수 있는 項目도 부속명세서로 요구하고 있다.

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 변동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 변동표에 대한 규정을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정부투자기관의 대부분이 公社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必要가 없기 때문에 그 重要性이 크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무상태변동표는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채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이며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활용방안을 살핀 다음에 회계규정에 도입하려는 뜻에서 규정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바에 따라 작성할 것으로 보고있다.

VI. 問題點과 改善點

政府投資機關會計規程은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투자기관의 會計制度 전반에 관한 統一된 회계업무처리와 보고사항을 規定한 것이다. 政府투자기관회계규정은 회계처리절차 이외에 帳簿制度, 資産投資, 豫算 및 契約規程 등 회계관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다. 政府投資機關의 監督管理의 次元에서 統一性を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會計情報의 有用性과 比較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先進社會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용하고 있는 각종내용을 채택하고 있다. 각 투자기관의 특성과 이 회계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각 投資機關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政府투자기관회계규정시행세칙”으로 制定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듯이 政府투자기관회계규정은 법적근거에 따라 制定되고 시행세칙은 하위법으로 본규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政府투자기관회계규정이 선진사회에서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수용하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기업회계기준보다 합리성이 인정되어 1990. 3. 29자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이를 수용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금번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政府투자기관회계규정도 현재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양회계제도가 회계본연의 목적인 의사결정에 유익한 정보를 산출하면서 사회의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조정역할을 다 하기위한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정립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정보의 경제성

기업이 작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유용한 정보로 감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중한 자료의 제공은 오히려 정보산출비용만 많이 소요되게 되며 산출원가가 정보로부터 얻는 편익을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보고서로서 충분히 입수할 내용을 중복하여 별도양식으로 보고하는 것을 자원의 낭비에 속한다.

例,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2년 比較)와 비교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명세서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세서

대차대조표(2年度分記載)와 비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2年度分記載)와 비교손익계산서

2) 연결대상인 종속법인과 관계회사 정의의 혼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6조(관계회사와의 연결회계)에서는 支配法人에 연결될 종속법인을 본 규정에서는 “관계회사”로 칭하고 있으나 一般화된 용어로는 종속법인이 아닌 20% 이상 50%미만의 주식소유나 출자한 기업을 “관계회사”라고 하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용어와 혼동을 가져오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相當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關聯會社”라고 또 구분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 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74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속의 “...관계회사 유가증권은...”은 동규정 제16조(관계회사와의 연결회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종속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의 “관계회사”를 뜻하는지가 애매하게 되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도 종속법인과 관계회사 내지 관련회사의 구분표시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정돼야 할 것이다.

3) 外貨資産과 負債의 換算關聯規程

政府投資機關의 경우에도 外貨資産과 外貨負債를 상당액 保有하고 있으므로 元貨換算에 따른 外貨換算損益差異에 관한 규정을 整備해야 한다. 改正企業會計基準에서는 外貨換算損益을 모두 當期損益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나 當期損益에 미치는 영향이 過大하고, 未實現利益의 計上에 따른 배당압력 등으로 말미암아 기업실무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의 실시를 1992. 12. 31이 속하는 회계년도까지는 외환차손익과 外貨換算損益의 회계처리를 從前의 규정대로 실시토록 유보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現實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시거액의 外貨換算損益 海外支店 등의 海外事業場換算差損益처럼 資本調整項目으로 특정기간 移延處理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직하다.

4) 低價基準評價와 現在價值評價制의 導入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도 企業의 資産評價에 있어 帳簿價額과 時價 또는 純實現可能價值(net realizable value)를 比較하여 低價로 評價하도록

義務化함으로써 現行資産價値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기업회계기준은 이를 수용하여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低價基準적용을 의무화하고,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임의선택하되 진부화등 품질저하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低價基準을 적용토록하였다. 투자자산 중 실질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때 주식으로 동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들도 일반기업처럼 低價評價에 의한 資産의 時價評價와 같은 맥락에서 長期延拂條件去來 등으로 인한 채권·채무의 現在價値評價制度의 導入을 통하여 대 차대조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일반기업과의 상호비교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투자자산의 평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은 회계주체의 대외신용을 염려하여 투자자산의 평가차손실이 막대한 경우에는 저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으나²⁹⁾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적정공시를 위하여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低價主義評價를 더욱 강화하여 義務化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사항으로라도 표시되어야 한다.

6) 이연자산의 상각기간문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안전성원칙에 따라 특정기간이내에 걸쳐 早期償却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서는 특정기간에 걸쳐 매기 정액상각하도록 統一하였다. 보수주의원칙에 따라 조기상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상호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뜻에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7) 有效利率法의 導入

개정기업회계기준에서는 利率要素에 起因하여 나타나는 각종 評價計定인 다음에 대하여 有效利率法(effective interest method)을 적용하여 償却 또는 還入하여 支給利率(社債利率) 또는 受入利率로 처리하고있는 실정이니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기업간상호비교와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각종 差異는 다음과 같다.

- ① 社債發行差金 ② 轉換權調整計定 ③ 新株引受權調整計定
- ④ 現在價値割引差金 ⑤ 長期保有債權의 差額

8) 無償増資로 인한 株式取得관련규정의 不在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資本轉入에 따라 保有株式 및 出資의 取得은 株式配當을 제외하고는 실질자산가치에는 변동없이 주식수 또는 출자만 증가되는 것이므로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기업회계기준 제95조)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도 있어야 될 것이다.

9) 주식사항의 활용과 회계정보량의 질적향상

정부투자기관회계에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를 확대하기 보다는 관련중 요항목에 대하여는 자세한 註釋을 달아서 정보의 質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公企業會計情報의 質의向上과 公示

政府投資機關의 會計도 一般商去來와 같은 經營活動을 하며 國民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公認會計士와 같은 專門監査人의 獨立된 會計監査를 받도록 하여 會計情報의 質을 向上시키고, 이를 위하여는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企業會計基準을 수용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會計處理에 대한 규정을 企業會計基準에 委託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한편 結算재무제표의 一般國民에 대한 公示도 公共性和 함께 적극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I. 結 言

公企業인 政府投資機關은 業種이 다양하며 국내의 唯一한 企業이므로 各機關別로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多樣하게 인정하여 회계정보의 有用性提高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편 회계에 子性이 지나치게 許容되면 회계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막대한 弊害를 자초할 수 있다. 따라서 政府의 管理下에 多樣性和 統一性이라는 양면성을 調和있도록 현명한 회계규정의 마련이 요청된다. 특정이해관계자를 의식하지 않고 국민대중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公共性을 중요시 하며, 公企業의 본래 指向目標達成을 위한 健全하고 公正한 情報提供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政府投資機關의 회계처리기준의 마련에 있어서도 企業會計基準과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회계관습을 존중하여 公益을 위한 公的會計가 수립되어야 하며 情報의 公示性이 강조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 고승희, 재무회계론, 단대출판부, 1984.
- 김형주, 회계기초이론, 법문사, 1984.
- 박충환, 비영리기관의 회계, 법문사, 1985.
- 송대희외, 공기업경영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기법, 경제개발연구원, 1987.
- 俞焄, 公企業論, 法文社, 1985.
-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85.
- 조성하, 중급회계, 무역경영사, 1988.
- 최병성, 기업회계의 이론과 실무, 중앙경제사, 1984.
- 西川義明, 公企業會計, 日本 國民書房, 昭和 53.
- 守永誠治, 非營利組織體會計, 研究, 慶應通信, 1989.
- 吉田寛外, 公企業, 基本問題, 日本森山書店, 平成元年.
- AAA(미국회계학회), A Statement of Accounting Theory, Evanston, Illinois, 1966.
- 증권관리위원회제정, 기업회계기준 1990. 3.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